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실시 학교 운영 경비 지원 의무화 등〉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936)

2024.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실시학교 운영 경비 지원 의무화 ..... | 3 |
| 2. 북한이탈주민 교육관련 협의체 구성 .....                 | 7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홍기원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4. 6. 25.
3. 회 부 일 : 2024. 6.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운영비는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대안학교인 여명·하늘꿈·드림학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통일부의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

어 해당 학교 운영이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3항 및 안 제24조제4항·제5항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실시학교 운영 경비 지원 의무화

- 현행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4조(교육지원) ① (생략)<br>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u>지원할 수 있다.</u> | 제24조(교육지원)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지원하여야 한다.<br>부칙<br><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재 통일부는 법 제24조제2항에 근거하여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와 여명학교 등 4개의 대안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며, 5개 학교에 지원되는 2024년도 보조금은 45억 6,000만원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운영비만 통일부에서 지원하고,<sup>1)</sup>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22.11.1.) 이후 대안학교의 경우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포함<sup>2)</sup>됨에 따라 '23. 3월부터 여명학교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부분은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대안학교 3개교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 1) ○ 교육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통일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학교설립기본계획” 및 후속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사항임.
- 한겨레중고등학교 설립은 2004년 7월 20일 교육부에서 “학교설립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당해 제11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거쳐 확정됨.
  - 학교설립기본계획에는 부지는 설립자가 부담하고(학교법인 전인학원), 시설비는 교육부, 운영비는 통일부, 기타 운영비 부족분은 경기도교육청이 사학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명시됨.
  - 다만, 한겨레학교 설립 실무지원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2005.7.5.), 경기도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 되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타 학교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인건비를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운영비는 통일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함.
- 목적사업비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부령(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등에 따라 학교의 신청에 따라 검토 후 목적사업비를 교부함.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교부금 산정기준학교: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공립·사립 특수학교 및 공립·사립 대안학교  
비고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1) 초등학교의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 2)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대안학교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등 현황 >

| 학교명                   | 한겨레<br>중고등학교            | 여명 학교                    | 하늘꿈 학교                                      | 드림 학교                    | 장대현<br>중고등학교                            |
|-----------------------|-------------------------|--------------------------|---------------------------------------------|--------------------------|-----------------------------------------|
| 법적<br>성격              | 특성화학교                   | 대안학교                     |                                             |                          |                                         |
| 종류                    | 중·고등학교<br>(사립)          | 고등학교                     | 중·고등학교                                      | 고등학교                     | 중·고등학교                                  |
| 개교일                   | 2006. 3. 1.             | 2004. 9. 14.             | 2003. 3. 10.                                | 2003. 3. 1.              | 2023.3.1                                |
| 교육청<br>인가일            | 2005. 7.<br>(설립인가)      | 2010. 3.<br>(대안학교<br>인가) | 2015. 11.<br>(대안학교<br>인가)                   | 2018. 4.<br>(대안학교<br>인가) | 2022.11.28(<br>대안학교<br>인가)              |
| 통일부<br>지원일            | 2007. 1.                | 2015. 1.                 | 2016. 1.                                    | 2019. 1.                 | 2023.3.                                 |
| 지원내용                  | 운영비 지원<br>(인건비: 교육청 지원) |                          | 인건비, 운영비 지원                                 |                          |                                         |
| 위치                    | 경기도 안성시<br>죽산면 칠장리      | 서울시 중구<br>남산동 2가         | 경기도 성남시<br>수정구<br>성남대로<br>1518번길<br>11(북정동) | 충남 천안시<br>충절로<br>535-31  | 부산시<br>강서구<br>신호산단4로<br>76번길71(신<br>호동) |
| '24년도<br>지원예산<br>(억원) | 20.7                    | 8.1                      | 8.1                                         | 5.7                      | 3.0                                     |

자료: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적응·정착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2차적으로 통일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과 같이 통일부의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예산안 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음.

- 참고로, 통일부는 탈북학생수 증감, 교육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성과가 부진한 경우 경비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 북한이탈주민 교육관련 협의체 구성

-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관련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현행                                                                                                                                                                                     | 개정안                                                                                                                                                                                                                                                                                                    |
|----------------------------------------------------------------------------------------------------------------------------------------------------------------------------------------|--------------------------------------------------------------------------------------------------------------------------------------------------------------------------------------------------------------------------------------------------------------------------------------------------------|
| <p>제24조(교육지원) ① ·② (생략)</p> <p>③ 통일부장관은 <u>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u>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호대상자의 학력 진단·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 <p>제24조(교육지원) ① ·② (생략)</p> <p>③ -----<u>보호대상자의</u><br/>-----<br/>-----<br/>-----<br/>-----<br/>-----.</p> <p>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p> |
| <p>&lt;신설&gt;</p>                                                                                                                                                                      |                                                                                                                                                                                                                                                                                                        |

|  |                             |
|--|-----------------------------|
|  |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현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sup>3)</sup> 및 제24조의2<sup>4)</sup> 등을 근거로 통일부,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음.

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의 입국 적응을 돕기 위하여 하나둘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1:1 온라인 화상영어교육, 방문 학습지 및 멘토링 지원 등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재단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음.

또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이 다수 재학중인 전국 24개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호대상자의 학력 진단·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에 20명의 통일전담교육사를 배치하였으며, 통일전담교육사는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기초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음.

② 교육부는 2009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시·도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서 다양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교육부가 수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

##### (1)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입국 초기, 전환기 교육 내실화

- 초기적응교육 및 학력심의 지원, 제3국 출생 한국어교육 지원, 입국초기 전환기 교육기관 관련 협의체 운영, 협력학교 운영

##### (2) 정착지 학교 학생 맞춤형 통합교육 강화

- 탈북학생 멘토링, 탈북학생 밀집학교 특별반 및 토요 거점 방과후학교, 탈북학생 잠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3) 탈북학생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 진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직업계열 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 및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 (4)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구축

- 교원연수, 탈북교사 및 전담코디네이터 연수

③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지역별상담복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전 부처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를 설립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면서, 통일부·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비중이 급증하고, 국내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부처간 협업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각 부처는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지원 경험에 매우 제한적이어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 또는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을 조정할 경험이 거의 없으며, 각 부처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남북하나재단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간의 협조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sup>5)</sup>.

□ 교육지원 대상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범위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국내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

---

5) 윤상석,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 개편방안: 누구를, 어떻게,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제13차 탈북학생 교육 포럼)」, 2022.7.14.

적이 국회<sup>6)</sup>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보다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교육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를 열거하고 있는데, 협의체 참여대상 기관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열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참고로, 통일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20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심의하고 있는 바, 별도의 협의체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267 |

6) 2021년 국정감사 관련 시정요구사항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국내정착 지원을 확대할 것
-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